

## ESCO 성과보증제 도입 의미와 향후 전망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  
홍선표 과장(sphong@kemco.or.kr)

정부에서는 그동안 성과배분계약 방식만을 적용해왔던 국내 ESCO사업에 2004년도 사업부터 성과보증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하였다.

성과보증제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사용자가 부담하되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량(액)을 ESCO가 보장하는 제도로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ESCO 계약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002년 용역사업을 통해 성과보증제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작년 6월 ESCO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금회 도입한 성과보증제는 외국에서 시행중인 성과보증 계약 제도를 국내 ESCO 시장에 맞도록 변경하여 한국형 모델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ESCO 및 에너지사용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과보증 표준계약서』를 병행 제시하였다.

성과보증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직접 조달하여야 하나, 정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사용자가 공동주택, 상가연합회 등과 같이 다수로 구성되어 대출 주체가 불명확하여 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 사업부터 성과보증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성과보증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였다.

금회 성과보증제의 도입으로 ESCO에서는 그 동안 성과 배분계약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누적된 부채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에너지사용자는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지원에 의존해 온 국내 ESCO시장에 민간자본을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ESCO 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기술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성과보증제 도입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 대상시설에 관계없이 융자추천신청서를 본사에서 일괄 접수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 1. ESCO 성과보증제도 개요

### 가. 도입목적

- 국내 ESCO사업의 안정화 및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CO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는 성과배분계약 중심의 현행 성과배분계약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 ESCO의 부채율 증가, 사업성과와 관련된 분쟁발생 등 현행 성과배분계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ESCO 기업의 발전기회를 제공
-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보증계약의 업무흐름에 따른 추진모형 및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

### 나. 성과배분제와 성과보증제 비교

구 분	성 과 배 분 제	성 과 보 증 제
투자모형	<p>사용자 성과배분계약 ESCO 금융기관 재원조달</p> <p>– ESCO가 투자비 조달 및 기술력 제공</p>	<p>ESCO 성과보증계약 User 금융기관 재원조달</p> <p>–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를 조달 – ESCO는 기술력만 제공</p>
성과측정 및 측정 결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시 성과배분비율 확정</li> <li>– 설치완료 후 발생한 성과를 계약에 따라 배분 (사업기간 종료 후 에너지 사용자가 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 보증절감량 및 목표절감량 설정</li> <li>– 설치완료 후 성과측정을 실시하여 절감량을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시설 또는 절감량 측정 생략을 사전 합의한 경우 제외</li> </ul> </li> <li>– 측정결과가 보증절감량에 미달시 ESCO에서 차액을 배상하고 목표 절감량을 초과시 ESCO와 에너지 사용자가 계약에 따라 배분</li> </ul>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의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이 해소 되므로 에너지사용자가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감량 보증으로 에너지사용자의 투자위험 최소화</li> <li>– ESCO의 부채비율감소로 사업확대 가능</li> <li>– 시장 신뢰도 및 건전성 확보 가능</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CO의 부채비율증가로 사업확대 및 중소 ESCO의 사업추진 곤란</li> <li>– 공사수주를 위해 에너지절감량을 과잉 산정하는 등 신뢰성 상실</li> <li>– 과열경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부담으로 인해 투자회피 가능성 존재</li> <li>– 성과보증 및 차액배상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와 ESCO 사이에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음</li> </ul>

## 2. 성과보증제 주요내용

### 가. 도입목적

- 기본 모형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의 조달 주체를 에너지사용자로 변경
- ESCO가 절감량을 보증하여 에너지사용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
- 진단 및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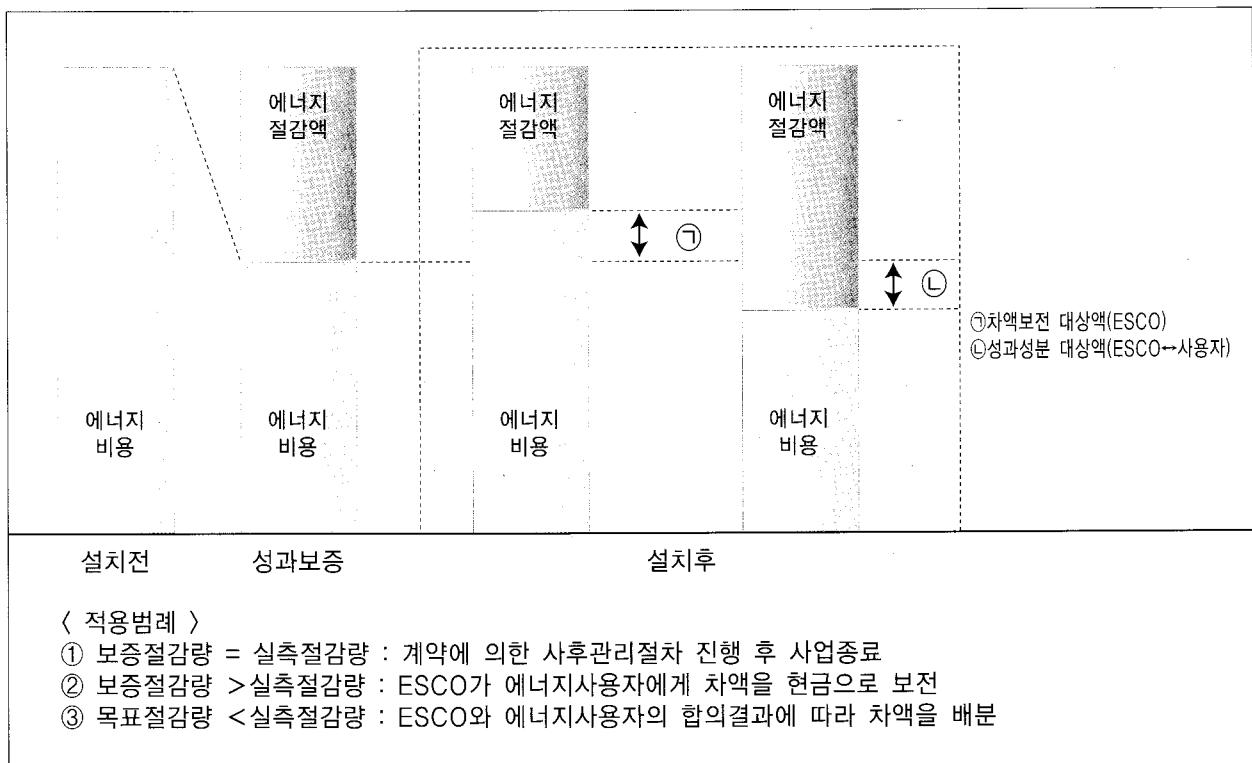
### 가. 성과보증제도의 개념

- 사업착수 전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진단, 기술검토 등을 통해 상호 합의 하에 절감기준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ESCO가 차액을 배상

## 나.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비용 조달 주체 변경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을 에너지사용자가 자체자금 또는 자신의 신용으로 제3의 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등으로 공급
  - 투자비 조달 주체의 변경에 따라 ESCO는 담보, 부채율 증가 등 자금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
  -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조달의 부담은 있으나 ESCO에 의해 투자성과가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 투자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진단 등 기술검토 강화
  - 성과보증제로 추진되는 사업은 용지추천 신청시 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도록 하여 충분한 사전 기술검토 이행을 유도
- 신청서 작성, 제출 등 행정사항은 현재와 같이 ESCO에서 전담하여 처리
- ESCO사업의 절감량 관리제도 도입
  - 계약체결시 에너지사용자 및 ESCO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제 절감량에 따라 성과배분에 차등 부여

- 목표절감량: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진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절감가능량
- 보증절감량: 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최소 절감 가능량
  - 보증절감량은 목표절감량의 9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사용자와 ESCO의 상호 합의로 결정
- 주) 경제성 분석, 용지추천신청서 검토 등은 목표절감량을 기준으로 적용
- 성과보증사업을 추진하는 ESCO에게 보증절감량의 달성을 의무화하여 에너지사용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
-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및 차액 보전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완료 후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여 실제 에너지절감량을 산출
  - 측정된 절감량이 계약에서 정한 보증절감량에 미달시 ESCO가 계약에 따라 차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
  - 목표절감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잉여 절감량은 에너지 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따라 배분



#### 다. 성과보증사업 추진절차



#### 라. 기대효과

- ESCO의 부채비율 감소로 사업활성화 가능
- 에너지절감량 과다 산출 방지로 시장의 신뢰도 및 건전성 확보
- 업체별 특화된 기술력 향상 유도
- 민간자금을 통한 자율시장 형성 등 ESCO 사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3.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계약자	(갑) 에너지사용자		인		
	(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		
	(병) 연 대 보 증 인		인		
계약내용	사업(투자시설)명	( 분야)			
	투자시설 설치장소				
	사업금액	금	원정₩	VAT별도)	
	설치금액	금	원정₩	VAT별도)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년 월)	
		설치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년 월)	
		성과보증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년 월)	
	에너지 절감량	목표절감량(액)	절감량 : _____	toe/년	절감금액 : _____ 원/년
		보증절감량(액)	절감량 : _____	toe/년	절감금액 : _____ 원/년
	초과절감액 배분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에너지사용자 (%)		
<p>에너지사용자의 장(계약담당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에너지절감량 산출기준 1부      4.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5. 사후관리계획서 1부      6. 특별사항서 1부      7. 하자보증서 1부. 끝.</p>					

## 계약일반조건

###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성과보증제도에 바탕을 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로 정의된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예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예법 제2조 제3호의 에너지사용시설, 제5호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제7호의 에너지공급설비 및 대체에너지보급·이용촉진법 제2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 및 생산시설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절약 또는 에너지대체를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는 개체, 개선함을 말한다.

5.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량을 말한다.

6.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7.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9. “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을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11.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2.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갑”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3. “설치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4.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증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에너지절감량 산출기준 1부
4.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5. 사후관리계획서 1부
6. 특별시방서 1부
7. 하자보증서 1부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

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 [연대보증인]

①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에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동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어야 하며, “갑”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대보증을 생략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的 사유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대보증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갑”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 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을”이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的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

역의 변경은 불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차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갑”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的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的 확인을 드 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 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을 발생일로부터 (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을”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的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的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

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的 사정 등 “을”的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붙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的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 제12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的 완료 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제13조 [폐자재 처리]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的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的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 제14조 [성과보증]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붙임의 “사후관리계약서”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률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 “을” (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률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을 (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 )이 부담한다.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성과보증과 관련하여 “갑”的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② “을”은 “갑”的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的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的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的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的 부담으로 복구한다.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 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的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的 정보를 계약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的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 제17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분쟁의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토록 한다.

#### 에너지절약성과보증사업 내역서(예시)

##### 1. 재료비

품명	규격	단가(원)	수량	금액(원)
전자식 안정기	32W × 1	13,000	2,400	31,200,000
전자식 안정기	32W × 2	15,000	3,100	46,500,000
고조도 반사갓	32W × 2	14,000	500	7,000,000
잡자재	식		1	4,235,000
			계	88,935,000

##### 2. 노무비

품명	규격	단가(원)	수량	금액(원)
안정기 설치비	32W × 1	6,500	2,400	15,600,000
안정기 설치비	32W × 2	7,000	3,100	21,700,000
간접노무비	%			1,700,000
			계	39,000,000

##### 3. 경비

품명	규격	단가(원)	수량	금액(원)
산재보험료	%			1,100,000
교용보험료	%			580,000
안전관리비	%			700,000
사후관리비	식		1	1,200,000
기타경비	식		1	1,000,000
			계	4,580,000

##### 4. 총 투자사업비

항목	개체수량(EA)	소요금액(원)	비고
재료비		88,935,000	
노무비		39,000,000	
경비		4,580,000	
일반관리비		5,000,000	
이윤		6,500,000	
사후관리비		1,500,000	
총 사업비		145,515,000	

### 에너지절감량 산출기준(예시)

#### ▶설비개요- 변경전

구분	기기명	규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기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설비개요- 변경후

구분	기기명	규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기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변경전 에너지사용량

- 기준연도 :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 (원/Nm³)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				에너지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기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³, ℥ )	기동시간 (시간)	단가 (원/Nm³, ℥ )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 기준연도 :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l (원/Nm<sup>3</sup>)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				에너지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기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m <sup>3</sup> ,l )	기동시간 (시간)	단가 (원/Nm <sup>3</sup> ,l )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에너지절감량

구분	에너지절감량(목표)	에너지절감액(목표)	에너지절감량(보증)	에너지절감액(보증)
전기	toe/년 ( kWh/년)	천원/년	toe/년 ( kWh/년)	천원/년
열	toe/년 ( l /년)	천원/년	toe/년 ( l /년)	천원/년
합계	toe/년	천원/년	toe/년	천원/년

## ▶기타 특이사항(예시)

- 기존 에너지사용량 산출 근거 : 상세 내용 별첨 진단보고서 참조
  - 기존 에너지사용량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지출된 실제 에너지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산출은 에너지 단가, 부하량 및 운전시간 등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시설 변경 전후 운전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 [붙임] 에너지절약시설 진단보고서 1부.

174

##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표준양식

(召)

(四)

“을”은 “깁”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천원( toe)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에너지절감액(량)이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깁”에게 차액을 배상할 것을 회약하다.

투자시설명	에너지절감량	에너지절감액	비고
	<input checked="" type="radio"/> 목표절감량 ; _____ toe/년	<input checked="" type="radio"/> 보증절감량 ; _____ toe/년	
	<input checked="" type="radio"/> 목표절감량 ; _____ toe/년	<input checked="" type="radio"/> 보증절감량 ; _____ toe/년	

176

하자보증서 표준양식

(갑)

(1)

1. “겁”과 “을”은 본 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시점은 에너지절약설치의 완료검사일을 개시일로 한다.

2. “을”은 각 제품 또는 성능개선의 하자보증서를 “김”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호 합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四三五]

사후관리계획서 표준양식

(合)

(을)

“을”은 본 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목적 및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당해 내용에 따른 사후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화약합니다.

1. 사후관리 범위
  2. 사후관리 업무의 구분
  3. 사후관리 내용 및 절차
  4. 에너지절감량 측정
  5. 측정결과의 보고
  6. 에너지절약시설의 유지관리